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웅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70
----------	-----

발의연월일 : 2026.03.12.

발 의 자 : 유지웅 의원(1명)

찬 성 자 : 김지훈·이은경·이형준
오지환·하서영 의원
(총5명)

1. 제안이유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걸쳐 운수종사자 이탈과 구인난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나. 처우개선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라.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으로, “규정함”을 “규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마을버스의 안전과 이용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u> <u>재정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u> <u>시 서초구민의 이동권 확보와</u> <u>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u> <u>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u> <u>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u> <u>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u> <u>자에게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u> <u>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u> <u>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기준운송원가</u>”란 마을버 <u>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u> <u>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u></p>	<p><u>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u> <u>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u> <u>처우개선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여객자</u> <u>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u> <u>항-----</u> ----- ----- <u>마</u> <u>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u> ----- <u>규정하고,</u> <u>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u> <u>하여 마을버스의 안전과 이용</u> <u>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u> <u>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이동권 보</u> <u>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u>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마을버스 운수종사자</u>”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u>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u></p>

한다.

<신 설>

제7조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26.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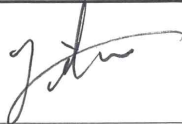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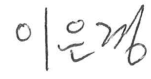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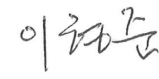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⑤ ~ ⑨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웅 의원 발의)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유지웅		김지훈	
		이은경	
		이형준	
		오지환	
		하서영	